

지역간 연계 · 협력의 확대 필요성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은 두드러지는 광역화전략 즉, “사업구역의 광역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전략”이며 광역화전략의 성공요인인 연계·협력제는 다름 아닌 지역간 연계·협력에 있다.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 3차원의 권역은 명칭, 목표, 수준은 서로 달라도 지역간 연계·협력을 운영 매카니즘으로 전제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협력이란 그동안 여러 연구자들(Barney, 1986; Dyer, 1984; Porter, 1985)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는데 대체로 볼 때 각각의 단위들이 개별적 목적달성을 위해 상호(互)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호(互)이익을 통해 자원, 권한 및 역할 등을 교환함으로써 상호(互)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일컫는다(Barney, 1986; Dyer, 1984; Porter, 1985).

다채로운 광역자치단체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와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는 물론, 초광역 차원의 광역권·광역경제권을 포괄하는 실용적 개념으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외부로부터의 지원에 기대기 어려운 상황에 다가온 고령화 사회에서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인력과 재정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국가·지방간 협력사업, 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시책)의 융복합화사업 등 다양한 방식의 연계협력방식을 추진함으로써 부족한 자치단체의 역량을 보완하고 한정된 지역발전 투자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을 통하여 중복투자자와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제공비용(production cost)과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절감하고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며, 민간자본 유치와 함께 투입 대비 추가이익의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공공서비스를 공동 생산함으로써 사업규모와 추진역량을 증대시키고 임계수요(critical mass) 또는 임계점(threshold)을 확보함으로써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실현해야 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I.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실태

1.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추진현황

정부는 지역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한 직후인 2010년부터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 지역발전정책의 권역유형별로 시범공모사업의 형태로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미 2010년과 2011년에 총 62개 사업에 대해 1,83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에는 신규사업 5개를 추가하여 67개 사업에 대해 1,48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의 경우 시·도의 1차 평가와 지역발전위원회의 2차 평가를 거친 후, 관계부처가 연계협력도, 타당성, 유사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우수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2010년 자치단체가 기초생활권계획을 수립하면서 총 339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였으며 두 차례 평가와 관계부처 검토를 통해 최종 14개 사업을 선정하여 이 중 12개 사업에 대해 2011년부터 광복회계 지역개발계정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은 시·도간 또는 광역권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적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전·후방 연계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도간 연계협력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수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은 광역위원회가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면 지경부 평가, KIAT 평가,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지원기간은 총 3년 이내인데, 1년 마다 사업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2010년 30개 사업에 대한 540억원의 지원을

2. 연계협력사업의 추진과정의 평가

정부에서 광역적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지역간 연계협력을 강조하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행정구역 단위의 투자가 관행화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연계협력사업의 추진성과는 미흡한 수준이다. 첫째, 계획수립 마감, 연계협력 사업의 평가, 예산 반영 등을 염두에 두고 짧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다보니 즉흥적으로 급조된(ad hoc basis) 계획이 많아 발굴건수에 비해 사업계획의 충실도와 실현가능성 등이 매우 취약한 편이다. 협력에 의한 지역발전은 시간을 정해두고 마감하는 사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 계획수립 단계에 임박해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경우, 협의조정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합의형성에 이르지 못 채, 단순한 구상 또는 제안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둘째, 연계협력사업의 선정과정이 중앙 위주의 하향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그 지역이나 권역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고유한 사업이 발굴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역이나 권역의 자발적인 노력이나 지역주민의 참여도 부족하다. 셋째,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족으로 연계협력의 추진을 위한 동기부여가 미흡한 형편이다.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별도의 투자재원이 부족하고 인센티브도 미약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 발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계협력사업 예산이 자치단체 단독사업 예산과 동일한 계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원한도 내에서 굳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연계협력사업을 기획하기 보다는 단독사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와 같이 기존 사업예산을 활용할 경우 당해 사업목적에 구속받아 다양한 사업의 발굴과 지원이 제도적으로 곤란하다. 넷째, 균특법(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계협력사업의 발굴과 자원분담 등을 책임지고 있는

경쟁이 아닌 상생으로 :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김 태 복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

“바쁘신 중에 인터뷰를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의 생활패턴은 광역화된 지가 오래이며, 지역 그리고 국가간 경제 및 교류활동의 범위도 행정구역을 벗어난지 오래입니다. 5+2 광역경제권은 현 정부의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정책기조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발전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09년 전국을 7개로 나눈 광역경제권을 육성하여 국토균형발전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수도권은 그 중 하나의 광역경제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산업 육성과 시·도간 연계 협력 추진 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09년 10월 출범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지역내 교수·경제전문가 등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내에는 60인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싱크탱크(think tank)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인천·경기가 함께 공동의 발전비전을 설정하고 주요 발전자원을 도출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사업과 자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내 자체적으로 광역인프라 기획단과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수도권내 20여개의 광역협력 사무를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공모와 행정, 재정, 기타 지원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자치단체로 하여금 상시 연계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체계를 정착시키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기반 조성을 통해 보다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의 협력은 물론, 남북지역 간 협력, 나아가 동북아 국경지역 간 협력으로 까지 발전시키고 내용적으로도 단일 품목 중심의 지역 개발사업을 지양하고 부처·기능 간 연계형, 패키지 지원형, 프로그램형 등의 사업으로 연계·협력을 확대하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협력촉진을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을 촉진 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계협력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협력 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지역 간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협력의 동기부여, 합의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협력절차의 진행 등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법에는 법률의 목적, 협력사업의 유형, 지원대상 분야, 협력계획의 수립, 협의절차, 재원지원, 추진체계, 지역 간 협약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을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기반을 구축해야 한다.